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8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	---

2. 주요 검토사항	3
------------------	---

※ 참고자료

1. HIV/AIDS 감염인 의료 차별 현황 자료	7
-----------------------------------	---

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결정문	8
---------------------------	---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HIV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주요 검토사항

-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감염인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감염인 대상 진료거부 또는 차별대우 금지 의무를 추가하고 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배경을 보면,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는 주로 성접촉이나 감염된 혈액의 수혈,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등으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확실한 전파경로가 있어 누구

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감염위험 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치를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으나,¹⁾ 다른 질환과 달리 사회적 낙인과 차별, 질병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하는 등 의료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임²⁾.

특히, 최근 HIV 감염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2024. 3.,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 주관), 참여자 수 799명 중 의료기관 입원 시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39명(17.4%)에 달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표식 부착(30.9%), 병실배정 차별(25.2%), 병동 직원의 부적절한 태도 등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거부 금지 규정³⁾외에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등의 HIV 감염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경우 HIV 감염인의 당연한 권리인 건강권 보장과 함께 HIV 감염인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7년 12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⁴⁾를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

1)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법령·지침·서식 /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도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HIV 감염인의 26.4%는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 기피·거부’ 경험, 조사 참여자들의 93%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많거나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3)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참고 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결정문 참조

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도록 하고,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며, 국·공립병원 의료인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책 권고를 한 바 있음.

□ 참고로, 연도별 신규 HIV/AIDS 감염인 수를 보면, 매년 1,000명 내외의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HIV/AIDS 신규 감염인 수 >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223	1,016	975	1,066	1,005
내국인	1,006	818	773	825	749
외국인	217	198	202	241	256

< 신규 감염 내국인 성별/연령별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006	818	773	825	749
성별	남	953	790	742	790	718
	여	53	28	31	35	31
연령별	0-9	0	0	0	0	0
	10-19	29	17	16	12	8
	20-29	365	343	286	257	226
	30-39	258	303	216	275	252
	40-49	158	152	106	126	102
	50-59	117	122	98	88	97
	60-69	59	62	39	49	48
	70≤	20	17	12	18	16

* 자료원: 「2023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제시 의견
질병관리청	- 의료현장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HIV 감염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진료 거부와 차별 대우 방지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대한의사협회	- 「의료법」 제15조 및 「응급의료법」 제6조 ⁵⁾ 에 진료나 응급의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HIV 감염인의 감염 관리는 차별이 아닌 해당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진료 과정이며, 다른 환자 또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문 의 처

02) 6788-5501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참고 1 HIV/AIDS 감염인 의료 차별 현황 자료

□ HIV 감염인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설문조사 결과 중 발췌

* (개요) (조사 주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설문 기간) 2024. 3. 26.~4. 22.(4주)
(참여자 수) 총 799명

- 의료기관 입원 시 차별 경험(139명): 표식부착 30.9%, 병실 배정 차별 25.2%, 감염사실 누설 20.9%, 병동 직원의 부적절한 태도 20.9%, **하나 이상 경험 71.5%**
- 의료기관 문제상황(지난 5년 동안)
 - (본인 경험) 별도의 기기나 공간 사용 13.5%, 병원 직원의 수군거림 12.9%, 채혈실 직원의 부정적 태도 9.9%, 협진 시 의료진의 부정적 태도 9.0%, 수술 또는 시술 거부 7.0%, 방사선과, 검사실 직원의 부정적 태도 6.3%, 원무과 및 수납 직원의 부정적 태도 6.1%, 검사 및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림 6.1%, 입원 거부 3.9%, 동행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 3.4%, 의료기기 이용 시 감염 사실 누설 2.9%,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 1.9%, **하나 이상 경험 51.9%**
 - (주변인 경험) 수술 또는 시술 거부 15.8%, 채혈실 직원의 부정적 태도 14.4%, 병원 직원의 수군거림 13.8%, 협진 시 의료진의 부정적 태도 13.9%, 검사 및 수술 순서가 뒤로 밀림 13.1%, 원무과 및 수납 직원의 부정적 태도 10.3%, 별도의 기기나 공간 사용 9.6%, 방사선과, 검사실 직원의 부정적 태도 8.5%, 입원거부 8.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 6.4%, 의료기기 이용 시 감염 사실 누설 6.1%, 동행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 3.9%, **하나 이상 경험 59.9%**

의료기관 문제상황

지난 5년 동안 병원에서 나/주변인이 겪은 경험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

타 병원 전원 시 감염 사실 누설

제3자에게 감염사실 고지

본인 경험

15명
(1.9%)

9명
(1.1%)

14명
(1.8%)

주변인이 경험

27명
(3.4%)

21명
(2.6%)

16명
(2.0%)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안(2017. 12. 6./2018년 1. 12. 공문 송부)

제 목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바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 가.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 나.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 다. ‘HIV/AIDS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및 ‘HIV/AIDS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 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람.

3.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람.